

변 경 내 용

1. 대상 투자신탁:

집합투자기구 명칭(종류형 명칭)	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
대신 배당주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	61295
수수료선취-오프라인(A)	61629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(C)	61293
수수료미징구-온라인(Ce)	75787

2. 주요변경내용

① 규약
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② 투자설명서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결산에 따른 수익률변동성 변경(19.33%->20.22%)
-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반영

③ 간이투자설명서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반영
- 3. 변경 대상 서류 : 규약,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- 4. 변경시행일: 2022.11.10.(목)



[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]

항 목	변 경 전	변 경 후
제 4 조(집합투자업	①<생략>	①< 현행과 동일 >
자 및 신탁업자의	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년	
업무)	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	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
	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	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
	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	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
	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재	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재
	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u><추가></u>	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u>투자신</u>
	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	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・관
	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	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
	무를 수행한다.	<u>는지 여부</u>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
		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
		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	③<생략>	③< 현행과 동일 >
제 25 조(판매가격)	①<생략>	①<현행과 동일>
	②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	②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
	자자가 15 시 30 분 경과 후에 자금을	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
	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	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
	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 3 영업일</u> 에	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3 영업일</u> 에 공
	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	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
제 26 조(환매업무)	<이전 생략>	<이전 현행과 동일>
	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	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
	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	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
	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	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
	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	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
	청구한 날부터 <u>제 4 영업일</u> (15 시 30 분	청구한 날부터 <u>4 영업일</u> (15 시 30 분 경
	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 4 영업일</u>)에	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4 영업일</u>)에 수익자
	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	<이하 생략>	<이하 현행과 동일>
제 27 조(환매가격)	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	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
	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2 영업	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2 영업일</u>
	<u>일</u> (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	(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3</u>
	제 3 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	<u>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
	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	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
	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 2 조제 5 호	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 2 조제 5 호의 규
	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	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
	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	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
제 30 조(기준가격	① 집합투자업자는<중략> <u>대차</u>	① 집합투자업자는<중략> <u>재무</u>
산정 및 공고)	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	<u>상태표</u> 상에 계상된 계상된 투자신탁(당



	수익증권의 상당액)자산총액에서 부채	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자산총액에	
	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	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	
	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	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	
	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	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	
	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	며,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	
	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	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	
	산한다	계산한다.	
	②~③<생략 >	②~③< 현행과 동일 >	
제 32 조(집합투자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	
기구의 회계감사)	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	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	
	를 작성하여야 한다.	를 작성하여야 한다.	
	<u>1. 대차대조표</u>	<u>1. 재무상태표</u>	
	2. 손익계산서	2. 손익계산서	
	3. 자산운용보고서	3. 자산운용보고서	
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	
	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	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	
	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	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	
		다만,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	
		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64 조에서 정	
		<u>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
	1.~2.<생략>	1.~2.< 현행과 동일 >	
제 39 조(보수)	①<생략>	①< 현행과 동일 >	
	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	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	
	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6 개월간으로	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6 개월간으로	
	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	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	
	매일 <u>대차대조표</u>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	매일 <u>재무상태표</u>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	
	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	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	
	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	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	
	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	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	
	<이하 생략>	<이하 현행과 동일>	
제 45 조(집합투자	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	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	
기구의 해지)	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	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	
	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	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	
	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	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	
	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	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	
	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	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	
	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	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	
	다.	다.	
	1.~2. <생략>	1.~2. <현행과 동일>	
	3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	3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	
	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	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	



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설정한 후 <u>1 년이</u>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의 원 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

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</u>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 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
--<이하 생략>---

제 45 조의 2(집합 투자기구의 소규모 해지)

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<u>1</u>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<u>1년이</u>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해소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

설립 이후 2년)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년(법시행령제 81조제 3항제 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해소 계획을 신탁업자 및

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설정한

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 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
후 1년(법시행령제 81조제 3항의제 1

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시행령

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에 집합투자기구

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

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
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

후 1년<u>(법 시행령제 81조제 3항제 1호</u>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

--<이하 현행과 동일>---

제 49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

- ①<생략>
-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
- 1. <생략>
-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

3. ~ 5. <생략>

- ③~⑥<생략>
- ⑦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(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

①< 현행과 동일 >

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

-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
- 1. < 현행과 동일 >
-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(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 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
- 3. ~ 5. <현행과 동일>
- ③~⑥<현행과 동일>
-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 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(모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



	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	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	
	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	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	
	음 각호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	음 각호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	
	지 아니할 수 있다.	지 아니할 수 있다.	
	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	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	
	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전화・전신・	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전화・전신・	
	<u>모사전송</u> 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	<u>팩스</u> 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	
	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	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	
	2. <생략>	2. <현행과 동일>	
	®~⑩<생략>	<pre>8~⑩<현행과 동일></pre>	
제 51 조(수익증권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	
의 통장거래)	"수익증권 <u>통장거래계약</u> "에 따라 통장거	"수익증권 <u>저축약관</u> "에 따라 통장거래	
	래 등을 할 수 있다.	등을 할 수 있다.	
부칙	<신설>	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 년	
		11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.	



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 항 안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 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 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 50억원 미만 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 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요약정보			
-투자비용 - 투자실적추이(연 평균수익률, 단 위:%) - 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결산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
- 투자자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·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 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 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 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.	•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 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2년)이 되 는 날에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 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 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소규모 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주요투자위험	자본시장법 시 행령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기구해지위험: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집합 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 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,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<u>1년</u>	집합투자기구해지위험: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집합 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 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,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<u>1년</u>

		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<u>1년이</u>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	(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 집합 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 경과시점에서 설정 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(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 1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경과한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매입방법, 환매방 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	제 X 영업일	X 영업일
제2부. 5. 운용전문 인력에 관한사항	업데이트	-	기준일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
제 2 부. 8. 가. 투자 대상 [모투자신탁의 투자 대상] 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의 투자 제한]	자본시장법 시 행령 개정사항 반영	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	<삭제>
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다. 기타 투자위험	자본시장법 시 행령 개정사항 반영	- 집합투자기구 해지 또는 해산: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 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 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 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이 지 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 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 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	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 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 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

		지될 수 있습니다.	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해지될 수 있습니다.
제2부. 10.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 구에 적합한 투자 자유형	결산으로 인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	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 등급을 구분한 결과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9.33% 이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 등급을 구분한 결과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20.22% 이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2부. 11. 매입, 환 매, 전환절차 및 기 준가격 적용기준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	제 X 영업일	x 영업일
제 2 부. 12. 기준가 격 산정기준 및 집 합투자재산의 평가	자본시장법 시 행령 개정사항 반영	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u>대차대조표</u> 상에 계상 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 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 다	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u>재무상태표</u> 상에 계상 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 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 다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 항	업데이트 및 주석문구보완	-	결산에 따른 업데이트,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금액 및 내역 추가
제3부.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자본시장법 시 행령 개정사항 반영	대차대조표	재무상태표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업데이트	-	결산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
제4부. 1. 집합투자 업자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 행령 개정사항 반영	대차대조표	재무상태표



다. 최근 2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 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업데이트	-	결산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
제4부. 6. 채권평가 회사에관한사항	사명 변경	KIS 채권평가㈜	KIS 자산평가㈜
제 5 부. 2. 집합투	자본시장법 시	임의해지	임의해지
자기구의 해지에	행령 개정사항	 <생략>	< 현행과 동일 >
관한 사항	반영	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	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
		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		^	^
		타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	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
		로서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	
		에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	조차 본 3년
		의 역원 미만인 경우	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
			<u></u>
			만인 경우
		 ④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	
		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	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(법 시행
		후 1 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	여 전 기존 기존 기존 <u>(임 기계용</u> 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
		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	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
		'- '- '- '- '- '- '- '- '- '- '- '- '-	
			
			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
		-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	-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
		가 설정 후 <u>1 년이</u> 되는 날 원본	가 설정 후 <u>1 년(법 시행령 제</u>
		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	81 조제 3 항의제 1 호에 집합투
		정되고 <u>1 년이</u> 지난 후 1 개월	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
		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	<u>립 이후 2 년)</u> 이 되는 날 원본액
		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	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
		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	되고 1년(법 시행령 제 81조제
		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	3 항의제 1 호에 집합투자기구의
		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	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
		합니다. 	<u>년)</u> 이 지난 후 1 개월 이상 계속
			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
			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
			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
			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



			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.
		│ │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	"=', ' ' ' ' ' ' ' ' ' ' ' ' ' ' ' ' ' '
		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	
		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	<u> </u>
		보호하기 위해, 아래와 같이 소	
		'''' 	
		리 정책,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	
		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	
		<u>= 이용하하하 합니다.</u> <이하생략>	
제 5 부. 3. 가.	용어정정	<u> </u>	-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
	5466		
(2)자산운용보고서		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	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
		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	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
		할 수 있습니다.	할 수 있습니다.
		(1)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	(1)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
		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	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
		전화·전신· <u>모사전송</u> , 전자우편	전화·전신· <u>팩스</u> , 전자우편 및
		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	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
		법으로 표시한 경우	로 표시한 경우
		<이하생략>	<현행과동일>
제 5 부. 3. 나. (2)	자본시장법 및	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	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
수시공시	시행령 개정사	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	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
	항 반영	없이 집합투자업자	없이 집합투자업자
		(asset.daishin.com) • 판매회사	(asset.daishin.com) • 판매회사
		및 한국금융투자협회	및 한국금융투자협회
		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	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
		이지와 집합투자업자 • 판매회	이지와 집합투자업자 • 판매회
		사의 본・지점 및 영업소에 게	사의 본・지점 및 영업소에 게
		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	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
		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	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		1. <생략>	1. <현행과동일>
		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	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
		정 및 그 사유(신설)	정 및 그 사유(법 제 230 조에
			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
			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
			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
			<u> </u>
		 3. ~ 7. (생략)	 · / 3. ~ 7. <현행과 동일>
		8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	8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
		· 자신탁(존속하는 동안투자금을	자신탁(존속하는 동안투자금을
		저는데(는데하는 중단+저답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	차면되(면도하는 8년 F차면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
		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	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

		로서 설정후 <u>1년이</u> 이 되는 날	로서 설정후 <u>1년(법 시행령 제</u>
		에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	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
		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	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
		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	<u>2년)</u> 이 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
		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	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
		실	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
			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
			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
		9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	9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
		자신탁이 설정되고 <u>1 년이</u> 지난	자신탁이 설정되고 <u>1 년(법 시행</u>
		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	<u>령</u>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
		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	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
		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	<u>설립 이후 2년)</u> 이 지난 후 1개
		1 항 단서에 따라 해지 될 수 있	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
		다는 사실	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
			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
			서에 따라 해지 될 수 있다는 사
			실
		10.~11.<생략>	10.~11.<현행과 동일>
제5부. 4. 이해관계			기준일 변경으로 인한
인 등과의 거래에	업데이트	-	업데이트
관한 사항			



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-투자비용 -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, 단위:%) - 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결산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
- 투자자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작성기 준 반영	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 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	는 날에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 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 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
- 주요투자위험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,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<u>1년</u>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<u>1년이</u>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	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,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(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)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
- 매입방법, 환매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 령 개정사항 반영	제 X 영업일	X 영업일